

공정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의결 및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10. 10.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표준약관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21개 은행이 동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어, 개별은행별로 약관을 수정, 금감원 등에 약관승인절차 진행후 일정 기간의 약관공고 등 시행작업을 거쳐 올 연말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①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에도 은행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 및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② 고객의 주의의무를 명시하며, ③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불성립 또는 지연의 경우 원금에 더하여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보상하되, 고객의 손실액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하고, ④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의무를 명시하며, ⑤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로 알게된 정보의 누출 금지

의무 및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시 책임규정을 명시하고, ⑥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것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 전자메일 통지 등 고지의무를 강화하며, ⑦ 피해구제 신청 대상기관의 확대 등이다.

또한,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의 특성과 사업자 및 이용 회원간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동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가입비에 대한 합리적 환불 기준 마련(제11조), 결혼정보회사측에 회원개인정보 보호의무 부과(제12조), 회원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명시(제7조), 회원의 의무(제8조) 및 계약종료 사유 구체화(제10조), 성호사례비에 관련하여 결혼정보회사측이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키로 한다는 것 등이다.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은 본지의 '부록(68면 이하)'에 게재하였다.

공정위, 신문공정경쟁규약(안) 수용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0. 5.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공정경쟁규약(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규약(안)은 향후 신문협회의 의사결정 절

차를 거쳐 확정되면 신문고시에 근거한 자율규약이 되어 새로운 자율규제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동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품 전면금지 및 무가지는 유료신문의 20% 초과 금지, 구독증지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강제투입 금지, 신문사의 지국에 대한 판매목표량·공급부수 등의 일방적 결정 금지, 유리한 기사개재 등을 전제로 한 광고제재 유인 금지, 광고제재 의뢰없이 선광고제재 후광고료 지급강요금지, 임직원·지국에 대한 신문, 잡지 등의 구입강요 금지, 시장지배적 신문사의 부당한 가격남용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동 규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문고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신문협회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신고사건을 신문협회에 이첩·처리토록 하고, 신문협회와 협의하여 신문협회와 공정위간의 업무연계방안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신문고시 및 자율규약 내용과 위반사안 신고요령 등에 대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신문고시 제11조

신문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제도 개선

현행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고시」에 의하면, 건설공체조합 등 각 공체조합에 의한 신용평가가 최상위 등급인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각 공체조합의 경우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그 동안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면제업체가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고, 그 결과, 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자인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지급보증면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동 제도의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신용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공인된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회사채평가를 기준으로 지급보증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면제기준을 A등급 이상으로 고시함으로써 지급보증면제대상 업체수를 대폭 축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현재 공인된 신용평가 전문기관은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등이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대상 고시는 2001. 10. 1.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분부터 적용(시행)된다.

2001.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공정위는 2001년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으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채무보증

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1년 9월중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는 1개사가 신규편입되고, 1개사가 계열제외되어 2001년 10월 4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계열 회사 수는 617개사로 2001년 9월과 동일하다.

◆ 2001년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개요 ◆

(단위 : 개사)

구 분	2001 9. 1.	편 입				제 외				증 감	2001 10. 4		
		회사 설립	주식 취득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전 체	617	-	1	-	1	-	-	1	-	-	1	-	617
1~4대	192	-	-	-	-	-	-	-	-	-	-	-	192
5~30대	425	-	1	-	1	-	-	1	-	-	1	-	425

◆ 2001년 9월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 ◆

◎ 편입 : 1개사(지분취득 1)

◎ 제외 : 1개사(청산종결 1)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회 사 명	업 종 명	사 유
롯데	(주)아이와이 피앤에프	의약품 제조판매	지분취득 (0%→100%)	-	-	-
동양 화학	-	-	-	동양산전(주)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	청산종결



공정위 인사

❖ 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소비자보호국장

이병주
임석규

❖ 부이사관 승진

하도급기획과장

이삼봉

❖ 부이사관 전보

국제협력과장
심판관리1담당관

남선우
박상용

❖ 과장급(서기관) 전보

송무담당관
국제기구과장
제도개선과장
대통령비서실

서석희 (前 심판관리3담당관)
김재우 (前 국제업무2과장)
김학현 (파견복귀)
지철호 (前 제도개선과장)

❖ 서기관 전보

송무담당관실

조성국 (前 심판관리3담당관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께서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Fax. 02)775-8873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여론조사단』 회원모집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적기에 파악·반영하고,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여론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여론조사단』은 공정거래업무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시 반영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5,000여명의 회원에게는 주 1회 공정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메일을 통해 제공하며, 2개월에 한 번 정도 소비자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공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네이트은 누구나 공정위 『사이버여론조사단』에 지금 가입하여 공정거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 신자경 504-9458, E-mail: sh127@ft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가입 회원사 ●

동일건설주식회사

대표 전경선

건설업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64

신규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